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30
----------	------------

제안일자 : 2025. 02. 25.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디지털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 등의 정의를 삭제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삭제하면서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고, 재난안전 체계 구축 등 현재 서울시 소관업무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가 가능하도록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디지털재난의 정의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고로 한정함(안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 신설)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이에 활용되는 용어인 ‘플랫폼 사업자’ 등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안 제8조)
- 디지털재난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토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

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재난발생 상황 전파에 서울시가 운영중인 재난문자 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을 “시민에게”로, “사고 등”을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

취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안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u>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u> 등을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u>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u></p>	<p>제2조(정의) ----- -----.</p> <p>1. ----- ----- ----- ----- <u>시민에게</u> ----- ----- <u>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합이 발생하는 사고</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u></p> <p>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u></p>

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 ③ (생략)

<신설>

제6조(위원회) ①·② (생략)

<삭제>

<삭제>

제5조(기본계획)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되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② (생략)

<신 설>

제8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 제11조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

<삭 제>

제8조 ~ 제10조 (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5.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훈련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재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정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

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
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
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